

1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개요

▶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목적

- 군수업체 자체 품질경영능력 제고
- 다양한 구매자 요구 충족
- 품질신뢰성에 대한 객관적 입증
- 품질향상,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

▶ 국방분야 인증제도 관련법규

- 「방위사업법」(법률 제15051호) 제29조의2(품질경영체제인증), 제29조의3(품질경영인증의 취소), 제29조의4(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제51조의2(수수료)
- 「방위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090호) 제71조(권한의 위탁)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국방부령 제995호) 제25조(품질경영체제인증)
- 방사청 훈령 제554호 「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 제4장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 국방품질경영체제 규격 변경 추이



▶ 국방품질경영체제의 구성

- 적용규격 : KDS 0050-9000-4 국방품질경영체제 요구사항
 - ISO 9001(2015) + 군수분야 특성 + 정부품질보증의 권한
 - 2자 인증형태

구 분	항목수	세부내용
ISO 항목	65	KS Q ISO 9001 : 2015의 65항목 요구(단, 28개은 내용 보완)
KDS 0050 - 9000 -4	특수 요구 사항	4.4.3 품질매뉴얼 4.4.4 외주프로세스 5.4 윤리경영 7.1.5.3 내부시험 7.2.1 교육훈련 8.1.1 제품 및 프로세스의 수락기준의 문서화 8.1.2 품질보증활동계획서 8.1.3 형상관리 8.1.3.1 형상식별 8.1.3.2 형상통제 8.1.3.3 형상확인 8.1.3.4 형상자료유지 8.1.4 위조 또는 변조의 방지 8.4.2.1 외부에서 제공되는 프로세스, 제품 및 서비스의 검증 8.5.1.1 생산 프로세스 검토 8.5.1.2 특수공정에 대한 관리 8.5.1.3 작업지침서 8.5.1.4 소프트웨어 장입 프로세스 관리 8.5.1.5 예방보전 8.5.3.1 관급재산 8.5.4.1 보관 및 재고 8.5.4.2 저장수명 제품의 관리 8.5.4.3 포장 및 표시 8.5.5.1 사용자불만 및 품질정보 등의 처리 8.7.3 불합격품의 관리 9.2.2.1 내부심사원 자격 10.3.1 생산 프로세스 개선
계	92	요구사항 항목 추가(27) 및 보충(28) 항목 수 : 55항목

▶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혜택

구 분	내 용	관련 규정
물품적격심사 경쟁입찰계약의 낙찰자 결정	• 기술능력분야 평가 시 가점 - 일반품목 : 1.0점 - 급식류 : 0.7점	방사청 예규 「물품 적격심사 기준」
방산물자 원가산정	• 경영노력평가 시 10점 부여 ※ 총 원가의 1% 이윤 가산	방사청 훈령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업체선정 평가	•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형상관리 및 품질보증방안 평가 시 가점 - DQMS 10% - 타분야 또는 민간분야 인증 5%	방사청 예규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양산단계 업체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형상관리 및 품질보증방안 평가 시 가점 - DQMS 10% - 타분야 또는 민간분야 인증 5%	방사청 예규 「무기체계(일반물자) 양산 제안서 평가기준」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대상 선정	• 주관기업 선정 평가 시 0.5% 가점 - 설계 및 개발분야 인증 획득기업	방사청 훈령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업체선정	• 업체선정 평가 시 1.0% 가점 - 설계 및 개발분야 인증 획득기업	방사청 훈령 「국가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유망 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업체선정	• 업체선정 평가 시 1.0% 가점 - 설계 및 개발분야 인증 획득기업	방사청 훈령 「국가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DQ마크 인증심사 시	• 공장심사 면제	방사청 고시 「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정부품질보증활동 시	• 품질경영체제 평가는 취약요소만 실시 • 선택품질보증형(II형)으로 조정 대상	기품원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

인증업무 상세 절차

인증신청업체의 자격

1.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업체
2. 방위사업법 제3조 제9의2호의 정의에 따른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방위산업체가 아닌 일반업체
3. 제1호 및 2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중 방위사업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군수품의 규격에 따라 군수품을 납품하는 업체

인증신청 방법

- 신청부서 : 기품원 품질보증 담당부서(전문센터)
- 신청시기 : 연중 신청 가능
- 신청단위 : 공장단위 원칙

1

최초 심사

최초 인증을 위해
업체 요청 시 실시



서면심사

- 인증신청조직의 제출서류 검토
- 인증범위 확인
- 품질경영체제의 문서화 정보 검토
- 사업장별 상태 평가 및 현장심사 준비상태 결정을 위해 인증신청 조직인원들과 논의
- 국방품질경영인증기준의 요구사항, 특히 품질경영체제의 주요 성과 또는 중대한 측면의 파악, 프로세스, 목표 및 운영과 관련된 인증신청 조직의 상태 및 이해정도를 검토
- 사업장, 사용된 프로세스 및 장비, 수립된 관리수준(특히 복수사업장이 있는 경우), 적용 가능한 법적/규제적 요구사항 등을 포함하여 품질경영체제 인증범위와 관련된 정보 획득
- 내부심사와 경영검토 계획 및 수행 여부를 평가하고, 인증신청 조직이 현장심사를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품질경영체제의 실행수준이 입증하고 있는지 평가

현장심사

- **심사내용**
 - 국방품질경영인증기준의 모든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에 관한 정보 및 증거
 - 주요 성과 및 세부목표 대비 성과 모니터링, 측정, 보고 및 검토
 - 품질방침에 대한 경영책임
 -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 프로세스의 운영관리
- **심사시기** : 서면심사결과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된 경우
- **심사일정 변경** : 업체는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심사일정 변경이 필요할 경우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가능한 한 조정을 시행함

부적합사항 시정조치

- 시정조치결과 보고서(업체)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심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심사팀에 문서로 제출

심사결과 부적격에 대한 업무처리

- 부적격업체 대상 : 심사결과 중부적합 2건 이상 발견된 경우
- 부적격 판정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음

2

정기사후관리심사

조직의 품질경영체제가
규정된 요구사항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
(매년 1회씩 실시)

심사내용

- 품질경영체제의 지속적인 개선 상태 및 효과
- 심사결과 발견된 부적합이 품질에 미치는 영향

심사연기 요청

- 인증업체는 심사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에정일 1개월 전에 심사연기 신청(연기사유 포함)을 기품원 품질보증 담당부서로 제출
- 기품원 품질보증 담당부서는 연기사유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인증업무주관부서로 심사연기의뢰 가능
- 심사일정은 심사가한일 이후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연기 가능

사후관리심사 생략

- 국방품질경영상 수상업체는 수상일 이후 도래하는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사후관리심사에 한하여 2회까지 생략 가능

심사범위

- 경영검토, 내부심사 계획 및 수행결과
- 이전 심사에서 발견된 부적합에 대한 조치 검토
- 목표달성과 관련된 품질경영체제의 효과성
- 지속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계획된 활동의 진행 경과
- 변경사항에 대한 검토
- 불만 처리 등

※ 전체 품질경영체제에 대한 심사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위 사항은 포함해야 함

인증신청서 작성 및 제출시 구비서류

- 인증신청서 및 인증서 표기사항
- 품질경영체제 문서(매뉴얼, 프로세스, 절차서 등 전자매체)
- 인증신청품목 생산 및 납품실적
- 경영검토 및 내부심사 자료
- 품질경영체제 연계표

- 최근 3년간 발생된 하자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 및 부정당업자 지정 내용
- 서약서
- 기타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타기관 인증서 사본, 해당되는 경우 동등 이상의 품목 증빙자료 등)

심사기준

- KDS 0050-9000-4(2016.12.26.) 국방품질경영체제 요구사항

심사팀의 역할

- 심사팀장 : 신청업체 및 심사팀원간 업무조정과 심사진행, 시정조치결과 확인 등 심사업무를 총괄
- 심사원 : 신청업체 및 주어진 심사대상에 대한 사전준비를 통하여 심사수행 및 시정조치결과를 확인
- 심사협력자 : 신청업체에 대한 심사팀 업무 보조

3

특별사후관리심사

조직의 품질경영체제가
규정된 요구사항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

심사내용

- 품질경영활동 중 품질경영체제에 대한 중대한 부적합이나 신뢰성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 조직의 품질경영체제가 전반적으로 변경되거나 생산요소의 중대한 변경(주요공정 및 생산시설 등)이 발생한 경우
- 물품의 결함으로 인명손상, 정부재산손실, 리콜 등과 같은 인증업체의 사회적 품질 이슈가 발생한 경우
- 품질경영과 관련된 법규위반, 범죄, 뇌물 공여, 비리 등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인증업체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인증업체의 하자발생 횟수가 기품원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무 규정」 별표 제7호(하자관련 특별사후관리심사대상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품질보증 담당부서 등의 요청 또는 인증업무 주관부서의 결정 등으로 심사실시
- ※ 기타 심사요령 및 절차는 정기사후관리 심사와 동일

4

변경심사



목적

- 조직에서 인증유효기간 중 인증범위 변경(인증규격 전환, 사업장 이전 또는 추가, 인증분야 추가, 인증범위 내 활동의 추가)이 필요한 경우 그 적합성과 적응성을 확인

신청방법

- 별도 신청 가능하며, 사후관리심사 또는 갱신심사와 통합 신청

5

갱신심사



목적

- 품질경영체제 전반의 지속적인 적합성 및 효과성을 확인하고, 인증범위에 대한 품질경영체제의 지속적인 관련성 및 적응성을 확인

심사시기

-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신청서류를 기품원 품질보증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 유효기간 내에 갱신심사를 받아야 함

인증서 유효기간

-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갱신심사 활동이 현재 보유한 인증 만료일 이전에 완료된 경우에는 인증 만료일 기준으로 3년간 연장되나, 인증 만료일 이후에 완료된 경우에는 갱신심사 완료에 따른 인증서 발급일 시점부터 만료일은 기존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설정



인증적격 심의

인증적격 심의 대상	최초 인증 및 변경심사가 완료되었거나, 사후관리심사 결과 취소사유가 발견된 경우 기품원 품질경영실무위원회에서 적격여부 결정
품질경영실무위원회 임무	- 인증대상범위 및 대상조직(사업장), 인증분류 및 범위, 적용규격 등 인증의 적합성 - 심사내용, 부적합내용 및 조직 시정조치결과 등 심사결과의 타당성 - 차기 사후관리심사 주기 - 인증범위 변경, 인증 취소 등 적격여부 결정

인증서 발급

인증서 발급 대상	기품원에서 인증서 발급을 의뢰하여 타당한 경우 방사청에서 인증서 발급
인증서 양식	국문 및 영문 2종으로 규정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발행하고, 인증서에는 인증범위 명시
인증서 발급 의뢰	심의결과와 적격으로 결정된 업체에 대해 방사청에 인증서 발급 의뢰
인증서의 재발급	- 인증업체의 요청이나 변경심사에 의한 재발급 - 인증범위 변경 및 사업장 명칭 변경 - 기타 타당한 사유로 인증업체에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 위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서를 최초 발급과 같이 재발급하되, 인증기간은 변경되지 않음
갱신심사에 의한 재발급	- 인증범위 변경없이 갱신심사결과 인증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갱신심사 및 시정조치 완료 후 인증서 재발급 - 인증범위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갱신심사결과 인증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판단되어 인증이 확정된 날로 인증서 재발급 -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심사 시에는 이전 인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년간 연장 - 인증업체의 요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심사가 실시된 경우에는 갱신심사(전과정) 종료일부터 3년간 연장 ※ 인증범위 변경 여부와 유효기간에 따라 발급
인증 효력	확정된 날로부터 3년

인증 취소

인증 취소 대상	-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방품질경영인증을 받은 경우 - 국방품질경영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중부적합이 2회 연속 발생 시 - 중부적합이 동일요건에서 2회 연속 발생 시 - 사후관리심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하거나 심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폐업 등의 사유로 방산물자 등의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소된 업체의 인증 신청	취소 결정일로부터 1년 경과한 후에 다시 인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증신청 및 심사절차는 최초인증심사 절차에 따름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심사 부적합 사례

4장 조직상황	4.1 조직과 조직상황의 이해	조직의 목적 및 전략적 방향과 관련이 있는 내·외부 이슈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검토를 실시하지 않음 - 매년 차기년도 사업계획 수립 전에 팀장급 이상 미팅을 통해 내·외부 이슈와 이해관계자의 요구 및 기대파악 결과를 파악하여 전략기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18년도 전략기획서가 작성되지 않음
	4.2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 이해	조직의 품질경영 업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ex, 주요 고객사, 파트너사, 협력업체)에 대하여 요구사항이 결정되지 않음
	4.3 품질경영체제 적용범위 결정	조직은 000에 대한 자체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규격 일치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나, 품질경영체제의 적용범위에는 내부 시험을 제외하였음
	4.4 품질경영체제과 그 프로세스	조직의 품질경영매뉴얼에 파악된 필요한 프로세스 적용의 결정, 프로세스 순서 및 상호작용의 결정사항 확인결과, 실제 운영 및 관리되고 있는 프로세스와 상이(다수 누락)하며 프로세스 간 순서 및 상호 작용관계를 식별할 수 없음 - 누락된 프로세스 : 구매업무, 자재 및 제품관리, 변경관리, 고객 관리 등
5장 리더십	5.1 리더십과 의지표명	조직의 품질경영매뉴얼에 품질방침 및 목표 수립을 최고경영자인 대표이사가 수행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경영자책임 요구사항에 대한 모든 이행을 대표이사가 아닌 조직의 품질경영체제 조직 및 운영(책임과 권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인원에 의해 이행 되고 있음
	5.2 방침	품질방침을 최고경영자가 아닌 품질경영대리인이 승인하였고, 경영자 면담 결과 최고경영자가 품질방침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품질매뉴얼 상의 품질방침과 방침추진계획서 상의 품질방침이 서로 상이함
	5.3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회사의 품질매뉴얼 책임과 권한 상에 인사팀, 물류팀이 누락 되어 있는 등 현행과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음
	5.4 윤리경영	조직은 윤리규범에 대한 교육 실적이 없으며, '00년 허위 원가자료 제출 및 성적서 위변조로 방사청 부정당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음
6장 기획	6.1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	조직의 목적 및 전략적 방향과 관련이 있는 내·외부 이슈를 결정하지 않았고, 이를 고려하여 프로세스별 식별, 평가, 조치 및 조치의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경영자 면담을 통해서 고객사 제품의 수출물량 증대에 따라 공급 물량을 맞추기 위해 공장 증축 및 설비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나, 이를 이슈로 결정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이를 고려하여 프로세스별 리스크와 기회를 결정하지 않음
	6.2 품질목표와 품질목표의 달성 기획	품질목표 및 프로세스 성과지표만 설정되어 있고, 이를 달성 하기 위한 품질경영체제기획서(ex, 사업계획 등)가 없음
	6.3 변경의 기획	조직은 국방규격 요구사항에 따라 품질경영체제를 변경(프로세스 추가, 문서 제·개정 등)하였지만, 이와 관련한 계획된 방식을 확인할 수 없음

7장 지원	7.1 지원	최근 도입설비(이물질 선별기, 금속 탐지기, ○○ 제조기 등)에 대해 조직에서 정한 설비관리대장, 목록표(이력카드), 점검 기록부 등이 미작성 됨
	7.2 역량/적격성	시험/분석인원에 대한 자격부여 기준이 학력만으로 설정됨
	7.5 문서화된 정보	국방도면의 유효여부에 대한 식별없이 생산가공 현장에 배포됨
8장 운용	8.1 운용 기획 및 관리	○○○의 제조공정별 공정변수(온도, 시간)가 각각의 문서 또는 기록(ex, 작업표준서, 제조 및 QC공정도, 공정관리일지)에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음
	8.2 제품 및 서비스 요구사항	조직은 ○○○○를 조기납품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납품일정을 납자부대에 통보하지 않아 일부 부대에서 불만이 접수됨
	8.3 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와 개발	설계 및 개발 기획의 결과인 개발계획서의 경우, 최초 승인 후 변동사항이(CDR 회의 후 신뢰성 요구사항 추가 등) 발생되었으나, 갱신되지 않음
	8.4 외부에서 제공되는 프로세스, 제품 및 서비스의 관리	'○○년 수입검사 시 불량률이 높은 업체(5개사)가 '○○년 공급자 정기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8.5 생산 및 서비스 제공	○○건조공정에서 제품별로 공정관리 기준이 수립되지 않음 - 공정관리기준 : 건조시간, 내부압력 및 잔공도 등
	8.6 제품 및 서비스의 불출	최종 제품검사 항목의 검사주기가 설정되어있지 않으며, 해당 검사항목에 대해 최근 검사를 실행하고 있지 않음 - 제품명 : ○○○(식품) - 검사항목 : KS H 2109:2014에 의한 수분 및 조지방 함량
	8.7 부적합 출력/산출물의 관리	완제품 시험 중 규격 불일치 사항이 발생되어 원인 분석을 위해 고객이 해당 제품을 봉인하였으나, 조직에서 임의 봉인 해제 및 조치함
9장 성과평가	9.1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	프로세스 성과지표에 대한 측정주기, 산식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모니터링 및 측정결과에 대한 분기별 실적이 관리되고 있지 않음
	9.2 내부심사	내부심사 시정조치 요구서 확인 결과, 발생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기록이 없음(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9.3 경영검토	품질매뉴얼에 경영검토자를 최고경영자가 아닌 품질팀장인 경영대리인으로 규정함
10장 개선	10.1 일반사항	조직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성과지표 목표 대비 달성율이 10% 이상 미달될 경우, 이상 발생대책 또는 만회대책을 명시하고 시정조치 요구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이행되지 않고 있음 - 고객불량률 목표는 0.3% 이하지만, 측정결과는 3.7%임
	10.2 부적합 및 시정조치	제품 ○○○에 대한 기품원 품질확인 시 기능 결함 건에 대해 조직은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동일한 방법으로 생산된 제품 ○○○에 대해서는 일시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 기품원 품질확인 중 동일 기능 결함이 재발견됨

메모